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유정인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1873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주 문

-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위례신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총 연장 14.8 km의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하나이고, 완공시 위례

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함에 따라 서울동남권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철도노선임

- 위례신사선은 국토교통부에서 '14년 5월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당시 '21년도까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18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 '20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24년 4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해 '13년 말 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임
-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23.1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각 지구별로 분산되어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되는 교통대책 사업비를 통합하고, 분양 완료 후 미집행 또는 미착수 교통대책 사업비는 LH 재무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위례신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주 택금융공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¹⁾
 - 우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음(교통정책과→대광위)
 - 교통정책과-2524호('24.2.6.)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관리제도 개선 요청
 - 국회에서도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서일준 국회의원(의안번호 26600, '24.3.5.)

1) 교통정책과-9920('24.6.10.)

4. 이 송 쳐

- 국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위례 신사선 사업이 자연됨에 따라 기 납부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위례신사선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연결하는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임

서울시는 '20년 1월 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중이었으나 '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결과²⁾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한 후 재상정”이라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종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 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변경³⁾함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3.9.19.) :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3) 서울시 보도자료('24.6.11.)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 재추진에 총력…민자-재정 동시 추진전략

-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종결…사업 동력 새롭게 마련

○ 위례 택지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부과 대상이고, 동 법 제11조의4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되 위례신사선은 착공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⁵⁾할 수 있으며, 위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원가 내 기반시설설치비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⁶⁾되어 있고 이는 분양원가⁷⁾에 반영되어 있음

○ '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이하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5. 차. 기반시설설치비 산정

1)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7) SH톡톡(<https://webzine.i-sh.co.kr/474>)

- 분양원가 = 택지조성원가 + 건설원가

* 택지조성원가 : 용지비, 조성비 등 10개 항목, 건설원가 : 공종별 공사비, 간접비 등 11개 항목

대책 변경8)"에서 위례신사선은 '21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1조 4,253억원 중 사업시행자는 2,300억원을 부담하되 사업시행자의 부담액은 총사업비 변동에 관계없이 정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로 SH공사도 동남권유통단지·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위례신사선 사업비 중 800억원을 부담하여 위례신사선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은 3,100억원에 이릅니다.

- 42,910세대로 계획된 위례 신도시는 '13년 12월 위례24단지와 위례22단지를 시작으로 입주되어 현재 대부분의 단지가 입주완료되었으나 당초 '21년 완공을 목표로 한 위례신사선은 착공도 하지 못하였고,

분양원가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자는 위례신사선 사업비 일부를 정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이자를 활용할 수 없고,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지위를 취소한 상황⁹⁾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은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여 위례신도

8)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p550 : 철도 및 신교통수단 설치계획

지점	구분	사업명	연장(km)	완료시기	총사업비(억원)	재원분담	시행주체	비고
⑦	당초	송파~강북도심간 급행간선철도	20.0	2013년	14,000 (2,300)	사업시행자 서울시+민자	민자사업자	
	변경	위례 신사선	14.83	2021년	14,253 (2,300)	사업시행자 민자+재정 SH공사	민자사업자	

주:1) ()는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 부담액

2) 위례 신사선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은 총사업비 변동에 관계없이 현재의 분담액을 정액 부담(2,300억원)하고, 동남권유통단지·문정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서도 별도 재원 부담

9) 관련 언론보도자료

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는 주민 분담금 납부시기와 사업비 집행시기 차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①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변동에 관계없이 2,300억원 정액 부담 확정, ②분담금 직접 수납방식이 아니어서 분담금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 미발생, ③사업시행자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미고려 등의 의견¹⁰⁾을 송부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관리제도 개선을 요청¹¹⁾한 바 있음

또한 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¹²⁾를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국회에서도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별도

-
- 머니투데이방송('24.5.14.):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으로 전황... 민자사업 해지 임박
→ 당일 서울시 해명자료: 위례신사선은 정상추진을 위해 검토중이며, 민자사업 해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음
 - 서울시 보도자료('24.6.11.)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 재추진에 총력…민자-재정 동시 추진전략

·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종결…사업 동력 새롭게 마련

- 10)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관련 의견 송부(한국토지주택공사 선교통계획처-4626호, '23.11.13.)
-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위례신사선”은 “사업시행자(LH, SH)가 2,300억원을 총사업비 변동에 관계 없이 정액 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어 당초 확정된 시행시기(2021년)에 맞춰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액을 적기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사업지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이 없음
 -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자 재원부담 금액은 사업 구조상 주민으로부터 분담금을 직접 수납하는 것이 아니어서 분담금 수납 및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민 분담금 납부시기와 사업비 진행시기 차이에 따른 대규모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사업시행자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11)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관리제도 개선 요청(교통정책과-2524호, '24.2.6.)

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3.12.5.) : 비상경제장관회의 23-28-3

-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¹³⁾을 추진한 바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동 건의안은 위례신사선의 조속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고자 ①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별도 관리 및 운영하고, ②광역교통시설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하는 한편 ③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정액부담 폐지 및 광역교통 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교통불편, 위례신사선 장기 사업지연, 서울시 의견, 정부 정책, 국회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 의원(의안번호 26600, '24.3.5.)

【붙임】 위례신사선 노선도

